

【 6 】 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제출연월일 : 1999. 6. 19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.

폐지이유

- 농촌근대화촉진법이 '95.12.29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가. “동 조례 폐지”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양주군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농촌근대화촉진법(廢止)

沿革

公布 番號	2199	公布 日期	1970·1·12	題名	농촌근대화촉진법
〔新規則定〕					
<p>農地의 改良·開發·保全 및 集團化와 機械化에 의한 農業生産力을 增進시키고 農家住宅을 改良함으로써 農村近代化를 促進시키기 위하여 農地改良組合 및 農業振興公社를 法人으로 設立하되, 農地改良組合은 組合區域안의 農地改良施設의 維持·管理와 區劃整理事業등을, 農業振興公社는 農地改良事業·農業機械化事業과 農家住宅改良事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.</p>					
公布 番號	2298	公布 日期	1971·1·22	題名	농촌근대화촉진법증개정법률
〔一部改正〕					
<p>① 조합구역이 아닌 지역도 필요한 때에는 農地改良事業施行前에도 조합구역에 편입할 수 있게 함. ② 農地改良組合事業으로 관개·배수시설을 할 수 있게 함. ③ 정부가 농지개발사업용 기계기구도 農業振興公社에 現物出資할 수 있게 함. ④ 農地改良事業施行에 관한 절차를 조정함. ⑤ 조합을 公社의 特許대수등의 사업에 합쳐지게 함. ⑥ 農地改良委員會에 관한 사항을 정함.</p>					
公布 番號	2486	公布 日期	1973·2·6	題名	농촌근대화촉진법증개정법률
〔一部改正〕					
<p>① 農業振興公社의 總裁를 社長으로, 副總裁를 副社長으로 改稱하고 副社長은 1人, 理事의 數는 7人以内로 減縮하고 任員의 任命節次를 變更함. ② 社長, 副社長 및 理事의 任期를 4年에서 3年으로, 監事의 任期를 3年에서 2年으로 短縮함.</p>					
公布 番號	2600	公布 日期	1973·3·12	題名	농촌근대화촉진법증개정법률
〔一部改正〕					

·農業振興公社에 대한 委任範圍制限에 관한 規定을 削除하려는 것임.				
公布 番號	2753	公布 日期	1975·4·4	題名 農村近代化促進法증개정法律
〔一部改正〕				
①賦課金の 督促滯納處分과 過課納의 處理를 하는 組合任職員의 行爲는 地方稅務公務員의 職務行爲로 보도록 함.				
②農地改良硯의 設置根據를 마련함.				
③農地擴大開發技術團을 설치함.				
④埋立地로서 國家가 다른 處理·處分하여야 할 것은 分配計劃에서 除外시킬 수 있게 함.				
⑤換地에 관한 規定을 詳細히 함.				
⑥農地改良事業施行者는 換地業務의 公正을 期하기 위하여 農水產部長官의 指 定을 받은 法人으로 하여금 換地業務를 代行시킬 수 있도록 함.				
⑦從前의 土地 및 換地의 評定價格·等級決定은 農林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 록 함.				
⑧農地改良施設의 登錄·管理·目的外 管理에 관한 規定을 두도록 함.				
公布 番號	3062	公布 日期	1977·12·31	題名 농촌근대화추진법증개정법률
〔一部改正〕				
①農地改良組合聯合會를 法人으로 設立하고 그 管掌業務를 規定함.				
②農地改良事業施行의 簡素化를 위한 類似 또는 重複條項을 統廢함.				
③他法에 의한 認·許可는 認·許可官廳과 農水產部長官間의 事前協議로써 같 음하도록 하되 着工前에 申告하도록 함.				
④農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造成된 土地 및 物件의 管理·處分에 관하여 規定 함.				
公布 番號	3120	公布 日期	1978·12·5	題名 農業機械化促進法
〔一部改正〕				
·農業機械化促進法이 制定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整備하려는 것임.				
公布 番號	4118	公布 日期	1989·4·1	題名 농촌근대화추진법증개정법률
〔一部改正〕				

<p>從前에 農地改良組合長을 비롯한 組合의 任員은 農林水產部長官이 任命하던 것을 앞으로는 組合員이 選出하도록 함으로써 組合運轉의 自律性과 靈活性을 提高하도록 하려는 것임.</p> <p>①組合에 理事 6人 이상 10人 이내를 두되 全部 非常任으로 하고, 組合長과 理事로 構成되는 理事會를 新設함.</p> <p>②組合 및 聯合會의 任員選舉에 있어 選舉運動目的을 위한 戶別訪問을 禁止하는 등 選舉運動方法을 制限하고 그에 違反한 者에 대한 罰則規定을 新設함.</p>					
公布番號	4229	公布日子	1990.4.7	題名	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
<p>(一部改正)</p> <p>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이 制定됨에 따라 相關사항을 整備하려는 것임.</p>					
公布番號	4252	公布日子	1990.8.1	題名	水產業法改正法律
<p>(一部改正)</p> <p>水產業法이 全文改正됨에 따라 이를 引用하고 있는 關係條文을 整備하려는 것임.</p>					
公布番號	4707	公布日子	1994.1.5	題名	糧穀管理法改正法律
<p>(一部改正)</p> <p>糧穀管理法이 全文改正됨에 따라 이를 引用하고 있는 關係條文을 整備하려는 것임.</p>					
公布番號	4823	公布日子	1994.12.22	題名	農漁村整備法
<p>(一部改正)</p> <p>農漁村整備法이 制定됨에 따라 相關사항을 整備하려는 것임.</p>					
<p>(廢 止)</p> <p>農地改良組合法(法律 第5077號, 1995.12.29)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됨.</p>					

양주군농지개발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

[1971. 1. 15]
[조례 제 259호]

개정 1984. 2. 1 조례 제961호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발사업 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농지개발 사업이라 함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.

제 3 조(부담금의 부과) 농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 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이익을 받은 한도안에서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 4 조(부과기준) 토지에 대하여는 수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등급별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시설 공작물에 대하여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수량과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한다.

제 5 조(부과액의 결정) ① 부과대상을 조사하여 토지와 시설물별 등급별 부과지수를 산정하여 부과액을 정한다.

② 부과총액은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유지관리비와 보상비등 소요 총액의 일부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.

제 6 조(부담금의 납입) 부담금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7 조(부담금의 징수)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제 8 조(부담금의 승계)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담금은 부과대상물의 권리 이전에 따라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.

제 9 조(벌칙)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탈한 액의 5배 이내의 과료에 처한다.

제 10 조(위임규정)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.

부 칙 (1971. 1. 15 조례 제25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9년 농민축산 제2장 기반건설 양주단양지개량사업부담부과징수조례

부 칙 (1984. 2. 1 조약 제96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